

감 사 원

통보(시정완료)

제 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부과 및 산지전용복구비 미예치

소 관 기 관 부천시

조 치 기 관 부천시

내 용

1. 업무 개요

부천시는 2016. 11. 23. ㄷ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 BT, 사무소소재지 경기도 부천시)이 신청한 ㄷ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시행구역: 일대, 총사업면적: 293,390m²)를 하면서, 총사업면적 중 산지전용면적에 해당하는 62,926m²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업무를 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청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되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산지전용 허가권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에게

산지전용허가 시 복구비를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받아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미리 송부하여야 하고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천시는 산지전용허가가 의제¹⁹⁴⁾되는 사업시행인가가 승인되면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게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고지하고,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송부하여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부천시가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 산지전용 수허가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업무 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천시는 2017. 1. 31. 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하면서 총사업면적 293,390㎡ 중 산지전용면적에 해당하는 62,926㎡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통지를 누락하였다.¹⁹⁵⁾

그 결과, 2017. 2. 6. 위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의제되는 사항인 산지전용허가도 함께 고시¹⁹⁶⁾되었

194) 「산지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195) 송부된 공문을 ○팀(▲과 ●팀) 서무담당자가 접수한 후 ▲과 ▲팀(2016. 12. 12. ●과로 위 사업에 대하여 녹지시설 조성 및 관리업무 관련 협의의견을 제출한 적 있음) 주무관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팀장 및 ▲과장이 최종 결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팀에 공람되지 아니함으로써 ○팀 담당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하지 아니함

1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에 산지전용허가 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으나 1년 2개월이 지난 2018. 4. 23. 감사일 현재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38,030,000원이 부과되지 않았고 복구비 988,741,000원 역시 예치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부천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위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 부천시가 2018. 5. 15. 사업시행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38,030,000원을 부과하고 복구비 988,741,000원을 예치하도록 통지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부천시장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보(시정 완료)]